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속승진 심사 대상 범위 및 필수보직기간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평가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공무원 인사 특례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속승진 심사 대상 범위 확대(안 제13조제2항)

근속승진 임용을 위해서는 일반승진과 동일한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공무원임용령 별표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처의 정원·인력구조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근속승진 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필수보직기간 특례 적용 범위 확대(안 제16조제1항제1호)

그간 특례운영기관에 한해, 국(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던 것을 전 부처로 확대하여 허용하고(공무원임용령 개정), ‘실(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임기제 채용 및 평가 자율성 확대(안 제10조의2제1항, 제2항)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소속 장관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 전문 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임용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면접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여 순위 없이 추천하면 임용권자가 적임자를 임용하도록 하고, 소속 장관은 근무성적평정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및 평가에 관한 특례) ① 인사특례 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한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에서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 순위 없이 추천하고, 임용권자는 합격자가 채용시험에서 제출한 성과기술서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적임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에 한한다)의 근무실적에 대한 정기평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 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별표 5에 규정된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국(局)”을 “실(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및 평가에 관한 특례)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한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에서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 순위 없이 추천하고, 임용권자는 합격자가 채용시험에서 제출한 성과기술서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적임자를 임용할 수 있다.</u> <u>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에 한한다)의 근무</u>

제13조(근속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 (생략) <u><신설></u>	<u>실적에 대한 정기평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다.</u> 제13조(근속승진 임용에 관한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별표 5에 규정된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①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국(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3. (생략)	제16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① ----- ----- ----- ----- ----- ----- ----- 1. ----- -- 실(室) ----- ----- ----- ----- 2.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319